#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

2025년 천안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천안도시공사 사장

## 1. 기관소개

천안도시공사는 2011년 설립되어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천안 만들 기"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등공기업"을 비 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전문성을비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전문성을비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전문성 기차를 참출하는 사람 전문성 기차를 참출하는 사람 전문성 기차의 분야에서 기상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 교육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함 참외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학신적인 공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평가받도록 노력함

# 2.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가. 구분

채용구분	직군	분야	인원	담당업무
일반경쟁	-1-1-T	수영강사	3	•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등
(4명)	기간제	청소원	1	(한들문화센터 또는 북부스포츠센터) • 천안종합운동장 내·외부 환경미화 등
합 계		4		

※ 부서 상황에 따라서 근무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음

## 3. 응시자격

### 가. 공통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모든 응시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 나. 자격사항

구 분	자 격 요 건
청소원	<ul> <li>공고일 전일 만50세 이상 ~ 만68세 미만인</li> <li>거주지: 천안시 거주지 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자)</li> <li>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전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있는 자</li> <li>공고일 전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자</li> </ul>
	• 연령: 공고일 전일 현재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 자격증: 아래 자격증 중 1종 이상 보유한 자
수영강사	<필수 자격증>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 인명구조요원 관련 자격증(유효기간 내) - 수상안전요원 관련 자격증(유효기간 내)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 4. 근무조건

분야		보수 및 근무조건
	청소원	•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공휴일·주말 초과근무 발생(월 3~4회 주말 근무)
		- 근무시간: (주중) 07:00 ~ 16:00, (주말) 07:00 ~ 11:00
		※ 근무편성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 보수: 2025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 11,876원 지급
기간제		• 계약기간: 임용일 ~ 6개월
	수영강사	• 근무시간: 06:00 ~ 15:00 / 13:00 ~ 22:00
		- 공휴일 및 주중·주말 초과근무 발생
		※ 근무편성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 보수: 천안도시공사 공무직 가군 호봉표 적용
		• 계약기간: 임용일 ~ 1년

# 5. 채용전형

가. 주요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나. 채용절차

구분	<u>4</u>	선발기준		
		· 공통 응시자격(자격사항, 거주지 등) 심사		
서류전	현형	· 분야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누락 및 불성실 기재 시 불합격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방법: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름		
	평가 기준	· 운영방식: 1(지원자) : 3(면접관) 면접		
		ㆍ 평정요소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내규」제11조 제3항에 따름		
면접		ㆍ불합격 조건: 면접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2개 항목		
전형		이상을 「하」로 평정		
		· 합격자 선정: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기준으로 선정함		
		- 적성(직무능력)검사 성적이 우수한 사람		
		- 면접시험 평정결과 평정요소 순으로 득점이 높은 사람		
		-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다수 소지한 사람		

구분	선발기준
	· 공통 응시자격 증빙서류 확인 등
자격심사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등 범죄경력 조회
	· 신원조사는 법적근거 미비로 불가능, 임용 시 각서로 대체

## 6. 가산 특전(가점 기준)

구 분	분 야	가 산 점 수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면접전형 3% ※ 분야 별 중복 불가

※ 국가보훈대상자는 최소 4명 이상 채용 시 적용하며 가점비율은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직급별·채용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7.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TE	<ul> <li>개인정보 수집</li> <li>주민등록초본</li> <li>(공고일 이후 발</li> <li>자격증 사본 1</li> </ul>	가기소개서 각 1부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부 ·행분, 거주지 변동사항 포함) 부(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	
공통		관련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일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사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u>2025. 1. 8.(수) ~ 1. 16.(목) 18:00까지</u>

#### 나. 접 수 처

- ①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천안도시공사 온라인 채용 누리집(https://recruit.cfmc.or.kr)

### 9. 채용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채용공고	2025. 1. 6.(월) ~ 1. 16.(목) / 10일간
원서접수	2025. 1. 8.(수) ~ 1. 16.(목) 18:00까지
면접전형 공고	2025. 2. 5.(수)
면접시험	2025. 2. 7.(금) 또는 2. 10.(월)
최종합격자 발표	2025. 2. 12.(수) 14:00
임용대상자 등록	2025. 2. 13.(목) ~ 17.(월) / 3일간
임용(예정)	2025. 2. 18.(화)

※ 상기 일정은 채용일정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

### 10. 안내사항

- 가.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 대 상: 해당 분야 최종시험 성적 차점 순위에 따라 3배수 결정
- ※ 유효기간 동안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에 별도의 채용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원된 인원에 대해 우선으로 선발 기회를 부여하는 것
- 나. 채용 제출서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 2)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3) 반환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본인 직접 방문(공사 경영지원부)하여 수령
- 다.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홈페이지에만 공고
  - 천안도시공사(www.cfmc.or.kr)
  - 천안도시공사 채용(recruit.cfmc.or.kr)

# 11. 유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사항	▶ 지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중복지원·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블라인드 채용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응시 자격요건 관련 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발언하여서는 안 됨
공정채용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금지하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음
중복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
시험공고	▶ 추후 전형 절차 진행에 따른 시험 장소, 세부 일정, 합격자명단, 임용 구비서류 등 모든 사항은 천안도시공사 및 채용 온라인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함.(개별 연락 없음)
마감시간 오 류	<ul> <li>▶ 원서접수 마감일 및 마감 시간 임박 시, 지원자가 몰려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는 지원서 미제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li> <li>▶ 원서 최종 제출 후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바람</li> <li>- 채용 온라인 누리집(https://recruit.cfmc.or.kr) → 마이페이지</li> </ul>
규정 위반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됨 ※ 자격 증빙 서류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받을 예정이오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 취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내용만기재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음
지원서 활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반환 기간
	이후 모든 서류는 파기합니다.
   정상 출근	▶ 임용예정일 이후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근이 불가할 경우
00 21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근무 평가	▶ 3개월(공무직 및 업무직) 또는 1개월(기간제) 수습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정식 근로계약 체결
야간 및	▶ 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 ~
휴일근로	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친인척 공개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따라서,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
	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함
пI +II О	▶ 우리 공사의 채용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 채 용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하겨 치스	▶ 최종합격자가 임용절차를 완료하였더라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합격 취소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11. 문의사항

본 공고 사항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천안도시공사 인사총무팀

- (☎ 041-559-3623, 36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전화 문의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단, 12:00 ~ 13:00 제외)

## 12. 결격사유

가.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